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95
------------	-----

제출년월일 : 2002. 11.

제 출 자 : 김 포 시 장

□ 개정구분 : 부분개정

□ 개정사유

당해년도 사용시기 경과 농기계를 임대사업자에게 사용하지도 않은 1차년도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은 농업인들에게 타당성이 결여되고 징수에 대한 설득력이 없으므로 당해년도 사용시기를 일실한 임대농기계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임대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다음년도부터 징수해야 함이 타당함.

□ 주요골자

- 당해년도 사용시기를 경과하여 농기계를 임대할 경우에는 다음년도 해당기종 사용시기 이전에 임대료를 징수하며, 징수한 년도부터 사용년한을 산정한다. (제16조제4항 신설)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김포시조례 제 호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당해년도 사용시기를 경과하여 농기계를 임대할 경우에는 다음년도 해당기종 사용시기 이전에 임대료를 징수하며, 징수한 년도부터 사용년한을 산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 (임대료) ①~③(생략)	제16조 (임대료) ①~③(현행과 같음)
④<신설>	<p>④당해년도 사용시기를 경과하여 농기계를 임대할 경우에는 다음년도 해당기종 사용시기 이전에 임대료를 징수하며, 징수한 년도부터 사용년한을 산정한다.</p>